

**제2553호**  
2017. 12. 06.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 구 보

- 조 려  
제140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제140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고 시  
제2017-116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8  
주식회사 센트럴디벨로퍼먼트, 에나에스테이트 주식회사 고시 제2017-2호: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전(정정)고시 ..... 9
- 공 고  
제2017-840호 : 2017년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 1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  
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공 |  |  |  |  |  |  |  |  |  |  |  |  |
| 람 |  |  |  |  |  |  |  |  |  |  |  |  |



|        |
|--------|
| 조<br>례 |
|--------|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17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0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2**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신설〉</p> | <p><b>제6조2</b>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li> <li>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li> </ol> <p>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p>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은 의원 신분상 이해관계에 관한 중요 사항이지만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불신임 사유가 발생 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을 만들어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신설(안 제6조의2)
  -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0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월 2,859,120원”을 “월 2,944,890원”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제2조 (생 략)<br>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u>월 2,859,120원</u> 으로 한다.<br>② ~ ③ (생 략)<br>제4조~제7조 (생 략) |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br>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 <u>월 2,944,890원</u> -----.<br>② ~ ③ (현행과 같음)<br>제4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의원 월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에 연동하여 인상하도록 의결된 「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기준(2014.11.3.)에 따라 2018년 의원월정수당 지급액을 지급상한선인 3%로 인상하여 변경하고자 함.(※ 공무원보수인상률:3.5%)

###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월 2,859,120원”을 “월 2,944,890원”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 고 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16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0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도로명주소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
|---------------------------------------|-------------------------------|-------------|--------------------|
|                                       |                               | 도 로 명 고시일   | 도 로 명 부여기준         |
| 서울특별시 중구<br>산당동 241-205               | 서울특별시 중구<br>다산로35길 25-3       | 2017.12.06. | 다산로35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
|                                       |                               | 2010.06.30. |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 서울특별시 중구<br>광희동2가 217-8<br>장충동1가 38-1 | 서울특별시 중구<br>장충단로8나길 11<br>-18 | 2017.12.06. | 장충단로8나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
|                                       |                               | 2010.06.30. | 장충단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 서울특별시 중구<br>홍인동 142-1,<br>142-2, 143  | 서울특별시 중구<br>퇴계로73길 20         | 2017.12.06. | 퇴계로73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
|                                       |                               | 2010.06.30. | 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주식회사 센트럴디벨롭먼트, 에나에스테이트 주식회사 고시 제2017-2호

##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정정)고시

1. 주식회사 센트럴디벨롭먼트, 에나에스테이트 주식회사 고시 제2017-1호(2017.11.22)로 이전고시 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13번지 일대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 고시 내용 중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의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주식회사 센트럴디벨롭먼트, 에나에스테이트 주식회사 사무소(☎ 02-774-87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6일

주식회사 센트럴디벨롭먼트 대표이사 최대식

에나에스테이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대식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사업의 명칭 :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함)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13번지 일대
- 면 적 : 1,191.8㎡(대지면적 : 968.4㎡, 정비기반시설면적 : 223.4㎡)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 성 명 : 주식회사 센트럴디벨롭먼트 대표이사 최대식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길 36(서소문동)
- 2) ○ 성 명 : 에나에스테이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대식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0(서소문동)

###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4. 11. 05.(최초) / 2017. 11. 08.(최종 변경)

### 마. 공사완료 고시일 : 2017. 10. 11.(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84호)

### 바. 이전고시 내역(변경없음)

- 내용생략

### 사. 정정 사유

- 별첨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중 지번 표기 오류에 따른 정정고시임

별첨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정정전]

| 연<br>번 | 소유자              | 종전의 토지 및 건물       |       |          |       |      |          | 비<br>고 | 분양 예정의 대지 및 건물  |                |          |                  |                 | 청산<br>징교부적수 |    | 비<br>고 |
|--------|------------------|-------------------|-------|----------|-------|------|----------|--------|-----------------|----------------|----------|------------------|-----------------|-------------|----|--------|
|        |                  | 지번                | 토지(㎡) |          | 건물(㎡) |      |          |        | 소유자             | 지번             | 토지(㎡)    |                  | 건물(㎡)           | 징수          | 교부 |        |
|        |                  |                   | 지목    | 지적       | 구조    | 용도   | 면적       |        |                 |                | 지목       | 대지지분             | 분양면적            |             |    |        |
| 1      | (주)센트럴<br>디벨롭먼트  | 서 소 문 동<br>120-13 | 대     | 868.40   | R.C   | 업무시설 | 3,332.78 |        | (주)센트럴<br>디벨롭먼트 | 서소문동<br>138    | 대        | 300.45<br>중74.4% | 4816.74<br>중50% |             |    |        |
| 2      | 에나<br>에스테이트(주)   | 서소문동<br>58-25     | 대     | 209.50   |       |      |          |        | 에나<br>에스테이트(주)  |                |          | 300.45<br>중25.6% | 4816.74<br>중50% |             |    |        |
| 소 계    |                  |                   |       | 1,077.90 |       |      | 3,332.78 |        | 환지 소계           |                |          | -                | -               |             |    |        |
| 3      | 서울특별시            | 서소문동<br>72-6      | 대     | 99.70    |       |      |          |        | 체비지             | 서소문동<br>120-13 | 대        | 667.95           | 9,318.16        |             |    |        |
|        | 재무부              | 서 소 문 동<br>120-51 | 대     | 9.80     |       |      |          |        | 서울시중구           | 서소문동<br>139    | 도        | 13.90            |                 |             |    |        |
|        |                  | 서 소 문 동<br>120-31 | 대     | 4.30     |       |      |          |        |                 | 서소문동<br>140    | 도        | 209.50           |                 |             |    |        |
|        |                  | 서 소 문 동<br>120-40 | 대     | 7.90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121.70         |          |                  |                 |             |    |        |
|        | 계                |                   |       | 1,199.60 |       |      |          |        |                 |                |          |                  |                 |             |    |        |
|        | 확정예정측량으로 인한 면적정정 |                   |       | 1,191.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1,191.80 |       |      | 3,332.78 |        | 총 계             |                | 1,191.80 | 14,134.90        |                 |             |    |        |

별첨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정정후]

| 연<br>번 | 소유자              | 종전의 토지 및 건물    |        |          |       |      |          | 비<br>고 | 분양 예정의 대지 및 건물  |             |       |                  |                  | 청산<br>징교부적수 |    | 비<br>고 |
|--------|------------------|----------------|--------|----------|-------|------|----------|--------|-----------------|-------------|-------|------------------|------------------|-------------|----|--------|
|        |                  | 지번             | 토지(㎡)  |          | 건물(㎡) |      |          |        | 소유자             | 지번          | 토지(㎡) |                  | 건물(㎡)            | 징수          | 교부 |        |
|        |                  |                | 지<br>목 | 지적       | 구조    | 용도   | 면적       |        |                 |             | 지목    | 대지지분             | 분양면적             |             |    |        |
| 1      | (주)센트럴<br>디벨롭먼트  | 서소문동<br>120-13 | 대      | 868.40   | R.C   | 업무시설 | 3,332.78 |        | (주)센트럴<br>디벨롭먼트 | 서소문동<br>138 | 대     | 300.45<br>중74.4% | 4,816.74<br>중50% |             |    |        |
| 2      | 에나<br>에스테이트(주)   | 서소문동<br>58-52  | 대      | 209.50   |       |      |          |        | 에나<br>에스테이트(주)  |             |       | 300.45<br>중25.6% | 4,816.74<br>중50% |             |    |        |
| 소 계    |                  |                |        | 1,077.90 |       |      | 3,332.78 |        | 환지 소계           |             |       | -                | -                |             |    |        |
| 3      | 서울특별시            | 서소문동<br>72-6   | 대      | 99.70    |       |      |          |        | 체비지             | 서소문동<br>138 | 대     | 667.95           | 9,318.16         |             |    |        |
|        | 재무부              | 서소문동<br>120-51 | 대      | 9.80     |       |      |          |        | 서울시중구           | 서소문동<br>139 | 도     | 13.90            |                  |             |    |        |
|        |                  | 서소문동<br>120-31 | 대      | 4.30     |       |      |          |        |                 | 서소문동<br>140 | 도     | 209.50           |                  |             |    |        |
|        |                  | 서소문동<br>120-40 | 대      | 7.90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121.70      |       |                  |                  |             |    |        |
|        | 계                |                |        | 1,199.60 |       |      |          |        |                 |             |       |                  |                  |             |    |        |
|        | 확정예정측량으로 인한 면적정정 |                |        | 1,191.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1,191.80 |       |      | 3,332.78 |        | 총 계             |             |       | 1,191.80         | 14,134.90        |             |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840호

2017년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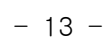
1. 공 고 명 : 2017년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2. 공고기간 : 2017. 12. 6. ~ 2018. 1. 4. (30일간)
3. 지정예정 대상지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6-565 1개소(1필지-붙임1 참조)  
※지정예정 대상지 도면 붙임2 참조
4.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5. 의견 제출기간 : 2018. 1. 4일까지
6. 지정예정 년월일 : 2018. 1. 15. ※진행 사항에 따라 「지정예정 연월일」은 변동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사항 : 붙임3 참조
8. 의견제출 :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중구청 공원녹지과로 이의 신청서(붙임4)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경과조치 : 기간 내 이의신청 의견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지정목적(사방사업 시행 등)이 달성 되었을 경우 지정해제 예정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공원녹지과(☎ 02-3396-58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대상지 필지별 내역

| 구분<br>(도면<br>번호) | 토 지 표 시 |   |     |     |         |    |        | 지정면적<br>(m2) | 소 유 자       |     | 비고 |
|------------------|---------|---|-----|-----|---------|----|--------|--------------|-------------|-----|----|
|                  | 시       | 구 | 법정동 | 행정동 | 지번      | 지목 | 지적(m2) |              | 성 명         | 주 소 |    |
|                  |         |   |     | 1개소 | 1필지     |    | 4,307  | 4,307        |             |     |    |
| 1                | 서울      | 중 | 신당동 | 약수동 | 346-565 | 공원 | 4,307  | 4,307        | 서울특별시<br>중구 |     |    |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대상지 도면



## (붙임 3)

##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림보호법」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주소 |                |     |      |     |
| 신청 이유   |        |                |     |      |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      |     |
|         | 면적     | m <sup>2</sup> |     |      |     |
| 이의신청 면적 |        | m <sup>2</sup> |     |      |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br>없 음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현지 조사 확인

→

심 의

→

결정 통지

처리 기 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